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프로그램 사용료의 할인근거 마련 및 비활성화 시간대 사용료 조정 등으로 구립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동작삼일수영장 개관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 추가(안 [별표 1])

1)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삼일수영장 포함

나.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할증 및 할인사항 개선  
(안 [별표 2])

1)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 추가

2)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 할인 사항 추가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전 조  
례를 적용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시설 및 기능
흑 석 체 육 센 터	현충로 73 (흑석동 116-1)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동 작 구 민 체 육 센 터	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사 당 종 합 체 육 관	사당로27길 232 (사당동 산21-9)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동 작 삼 일 수 영 장	사당로27길 지하 103 (사당동 164-1)	수영장 등
상 도 스포츠 클럽	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	체력단련장 등

[별표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제8조 관련)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기 본 사용료 상 한 (1일1회)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 (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400	17,600	36,300	55,000	72,600	81,400	92,400		
	청소년	3,300	12,100	24,200	36,300	49,500	55,000	62,700		
	어린이	2,750	8,800	18,700	27,500	37,400	41,800	48,400		
실 내 골프장	성 인	6,600	월 143,000							
	청소년 (어린이)	5,500	월 121,000							
헬스장	성 인	4,000	13,200	26,400	39,600	46,200	52,800	59,400		
	청소년	3,300	9,200	19,800	26,400	39,600	46,200	52,800		
체 육 관 등	개 인 사 용	성 인	5,500	12,100	25,300	44,000	50,600	57,200	64,900	
		청소년	3,300	8,800	18,700	28,600	37,400	42,900	48,400	
		어린이	2,750	7,700	15,400	23,100	31,900	35,200	40,700	
	대 관 료	사 당 총 합 체 육 관	체 육 경 기	220,000	·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기 타	660,000						
		기 타	체 육 경 기	143,000						
기 타	385,000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
  - ① 토·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②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음**
  - ③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 ④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선납할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 ⑤ 20명 이상 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른 규정에 의거 할인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단, 인근 공공유사시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없을 경우 인근 민간시설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 (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시설 및 기능</th> </tr> </thead> <tbody> <tr> <td>흑석체육센터</td> <td><a href="#">흑석로 73</a> (흑석동 116-1)</td> <td>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td> </tr> <tr> <td>동작구민체육센터</td> <td>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td> <td>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td> </tr> <tr> <td>사당종합체육관</td> <td><a href="#">사당동 신21-9 외 1필지</a></td> <td>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td> </tr> <tr> <td>상도스포츠클럽</td> <td>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td> <td>체력단련장 등</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	흑석체육센터	<a href="#">흑석로 73</a> (흑석동 116-1)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사당종합체육관	<a href="#">사당동 신21-9 외 1필지</a>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상도스포츠클럽	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	체력단련장 등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 (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치</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시설 및 기능</th> </tr> </thead> <tbody> <tr> <td>흑석체육센터</td> <td><a href="#">현충로 73</a> (흑석동 116-1)</td> <td>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td> </tr> <tr> <td>동작구민체육센터</td> <td>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td> <td>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td> </tr> <tr> <td>사당종합체육관</td> <td><a href="#">사당로27길 232</a> (<a href="#">사당동 신21-9</a>)</td> <td>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td> </tr> <tr> <td><b>동작삼일수영장</b></td> <td><a href="#">사당로27길 지하 108</a> (<a href="#">사당동 164-1</a>)</td> <td><b>수영장 등</b></td> </tr> <tr> <td>상도스포츠클럽</td> <td>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td> <td>체력단련장 등</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	흑석체육센터	<a href="#">현충로 73</a> (흑석동 116-1)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사당종합체육관	<a href="#">사당로27길 232</a> ( <a href="#">사당동 신21-9</a> )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b>동작삼일수영장</b>	<a href="#">사당로27길 지하 108</a> ( <a href="#">사당동 164-1</a> )	<b>수영장 등</b>	상도스포츠클럽	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	체력단련장 등
명칭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																																
흑석체육센터	<a href="#">흑석로 73</a> (흑석동 116-1)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사당종합체육관	<a href="#">사당동 신21-9 외 1필지</a>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상도스포츠클럽	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	체력단련장 등																																
명칭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																																
흑석체육센터	<a href="#">현충로 73</a> (흑석동 116-1)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동작구민체육센터	여의대방로16길 53 (신대방동 460-1)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체육관, 에어로빅실, 실내골프연습장																																
사당종합체육관	<a href="#">사당로27길 232</a> ( <a href="#">사당동 신21-9</a> )	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																																
<b>동작삼일수영장</b>	<a href="#">사당로27길 지하 108</a> ( <a href="#">사당동 164-1</a> )	<b>수영장 등</b>																																
상도스포츠클럽	성대로2길 11 (상도동 315-37)	체력단련장 등																																

## 현 행

[별표 2]

###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제8조 관련)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기 본 사용료 상 한 (1일회)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 (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400	17,600	36,300	55,000	72,600	81,400	92,400	
	청소년	3,300	12,100	24,200	36,300	49,500	55,000	62,700	
	어린이	2,750	8,800	18,700	27,500	37,400	41,800	48,400	
실내골프장	성 인	6,600	월 143,000						
	청소년 (어린이)	5,500	월 121,000						
개인사용	성 인	5,500	12,100	25,300	44,000	50,600	57,200	64,900	
	청소년	3,300	8,800	18,700	28,600	37,400	42,900	48,400	
	어린이	2,750	7,700	15,400	23,100	31,900	35,200	40,700	
체육관등 대관료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경기	220,000	·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기타	660,000						
	기타	체육경기	143,000						
		기타	385,000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
  - ① 토요일·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②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음**
  - ③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 ④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선납할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 ⑤ 20명 이상 단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른 규정에 의거 할인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단, 인근 공공유사시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없을 경우 인근 민간시설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5.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개 정 안

[별표 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제8조 관련)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 상	기 본 사용료 상 한 (1일회)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 (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4,400	17,600	36,300	55,000	72,600	81,400	92,400	
	청소년	3,300	12,100	24,200	36,300	49,500	55,000	62,700	
	어린이	2,750	8,800	18,700	27,500	37,400	41,800	48,400	
실내골프장	성 인	6,600	월 143,000						
	청소년 (어린이)	5,500	월 121,000						
헬스장	성 인	<b>4,000</b>	<b>13,200</b>	<b>26,400</b>	<b>39,600</b>	<b>46,200</b>	<b>52,800</b>	<b>59,400</b>	
	청소년	<b>3,300</b>	<b>9,200</b>	<b>19,800</b>	<b>26,400</b>	<b>39,600</b>	<b>46,200</b>	<b>52,800</b>	
개인사용	성 인	5,500	12,100	25,300	44,000	50,600	57,200	64,900	
	청소년	3,300	8,800	18,700	28,600	37,400	42,900	48,400	
	어린이	2,750	7,700	15,400	23,100	31,900	35,200	40,700	
체육관등 대관료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경기	220,000	· 기본인원 5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추가 ·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기타	660,000						
	기타	체육경기	143,000						
		기타	385,000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 할증 및 할인
  - ① (현행과 같음)
  - ②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 또는 할인 할 수 있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